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이 광 성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 외 31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현행 급수공사비의 계산방법은 급수관 인입구경 크기와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 정액공사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, 건물증축에 따른 인입급수관 구경 확대 공사의 경우에는 증축면적 기준에 따라 정액공사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 동 조례안은 건물 증축 시에도 실제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정액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‘증축면적’이 아닌 해당 ‘구경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변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건물증축에 따른 급수공사 정액공사비는 해당 구경에 따라 산정함을 신설하였습니다.

-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